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은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316

발의연월일: 2024. 8. 28.

발 의 자: 조은희·백종헌·신성범

서범수 • 이인선 • 이달희

이성권 · 김용태 · 박정하

서지영 의원(10인)

제안이유

청소년부모의 경우 학업과 생계를 병행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한 부모가족과 마찬가지로 자녀양육비 마련에 부담이 큼.

이에 2022년부터 저소득 청소년부모에게 아동양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법적 규정이 미비하여 현행법상 조손가족 지원에 대한 특례처럼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에 대한 특례를 마련하려는 것임.

또한 복지급여 지원대상자가 금융·신용·보험 정보제공 동의를 전자문서로도 가능하도록 하고, 부정수급자에 대한 비용 징수 절차를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도록 법률을 정비하려 함.

아울러,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운영 효율화와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여성가족부 장관이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대하여 시설 운영 및 서비스 등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시설 평가 업무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 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에 대한 특례 규정을 마련함(안 제5조 의2제4항 신설).
- 나. 금융·신용·보험 정보제공 동의를 전자문서로도 가능하도록 함 (안 제11조제2항 개정).
- 다. 여성가족부 장관이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시설 운영 및 서비스 등 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의2 신설).
- 라.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정수 급자에 대한 비용 징수를 하도록 함(안 제25조의2제2항 개정).
- 마. 시설 평가 업무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31조 개정).

법률 제 호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청소년부모"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아동양육비의 지원대상자가 된다.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서면"을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 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2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2(시설의 평가) 여성가족부장관과 시·도지사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시설의 감독·지원 등에 반영할 수 있으며 시설 거주자를다른 시설로 보내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5조의2제2항 중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를 "「지방행정제재·부과 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1조의 제목 중 "위임"을 "위임 및 위탁"으로 하고, 같은 조 중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하거나

정부가 설립·운영비용의 일부를 출연한 비영리법인으로서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기관에 위탁"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게 져 어
	개 정 안
제5조의2(지원대상자의 범위에 대	제5조의2(지원대상자의 범위에 대
한 특례) ① ~ ③ (생 략)	한 특례) ① ~ ③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④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
	조제6호에 따른 "청소년부모"로
	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
	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제12조
	제1항제4호에 따른 아동양육비
	의 지원대상자가 된다.
제11조(복지 급여의 신청) ① (생	제11조(복지 급여의 신청) ① (현
략)	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복지 급여 신	②
청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에	
대한 지원대상자의 동의 <u>서면</u> 을	<u>서면</u>
제출하여야 한다.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
	법」 제2조제1호의 전자문서를
	<u>포함한다. 이하 같다)</u>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u> <신 설></u>	제23조의2(시설의 평가) 여성가
	<u>족부장관과 시·도지사는 여성</u>
	가족부렁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시설을 정기적으로 평가하
	고,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시

- 제25조의2(부정수급자에 대한 비 용의 징수) ① (생 략)
 - ② 제1항에 따라 징수할 금액은 부정수급자에게 통지하여 징수하고, 부정수급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세 또는 <u>지방세 체납처분의 예</u>에 따라 징수한다.
- 제31조(권한의 <u>위임</u>) 여성가족부 장관이나 시·도지사는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u>시장</u> <u>·군수·구청장에게 위임</u>할 수 있다.

설의 감독 · 지원 등에 반영할 수 있으며 시설 거주자를 다른 시설로 보내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5조의2(부정수급자에 대한 비 용의 징수) ① (현행과 같음)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 수 등에 관한 법률 | -----제31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위임하거나 정부가 설립 · 운영비용의 일부를 출연

한 비영리법인으로서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기관에 위탁